

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세외수입 관리·분석에 관한 사항

16. 세외수입 전년도 체납징수(일반회계)에 관한 사항

제17조제1호 중 “주민세·사업소세”를 “주민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도축세·레저세”를 “레저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지방소득세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세무1과)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4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6조(세무1과) ----- -----.</p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5. 세외수입 관리·분석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6. 세외수입 전년도 체납징수 (일반회계)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17조(세무2과)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<u>주민세·사업소세</u>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</p> <p>2. <u>도축세·레저세</u>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</p> <p>3. ~ 10. (생략)</p> <p><u>11. 세외수입 관리·분석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2. 세외수입 전년도 체납징수 (일반회계)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7조(세무2과) ----- -----.</p> <p>1. <u>주민세</u>----- -----</p> <p>2. <u>레저세</u>----- -----</p> <p>3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13. 지방소득세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</u></p>